

2010년 지적재산법 중요 판례

A Study on Precedents regarding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2010

박 성 호 (Park, Seong Ho)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
초록 : 지적재산법과 관련하여 상당수의 판결이 2010년도에 선고되었는데, 본고는 지적재산법 관련 판결들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별하여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 글은 전부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은 서론이다. 제2장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에 관한 것으로서 특허요건인 발명의 신규성을 비롯하여, 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 직무발명의 보상, 디자인 유사 여부의 판단 등에 대한 판결을 분석·검토한다. 제3장은 상표법에 관한 것으로서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상표권의 효력 제한, 상표등록취소 등에 대한 판결을 살펴본다. 제4장은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것으로서 영업주체혼동행위, 영업비밀의 보호 등에 대한 판결을 검토한다. 제5장은 저작권법에 관한 것으로서 캐릭터의 저작물성, 업무상 저작물의 요건, 링크의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한 판결을 분석·고찰한다. 끝으로 제6장은 결론이다.

Abstract : There are not a few decisions of Korean courts in 2010 which should be reviewed theoretically on the level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Primarily,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and review judgements concerning intellectual property law rendered by the Supreme Court in 2010. This paper is composed of six parts. Part I is the introduction. Part II points out some problematic cases with novelty of invention, inventive step of invention defined by numerical limitation, compensation for the employee's invention, and determining whether a design is same or similar with another. Part III reviews the cases associated with grounds for rejection of registration, scope of ineffectiveness of trademark right, and cancellation of a registered trademark. Part IV examines the cases concerning acts causing confusion about the source of a service, and protection of trade secret. Part V reviews the cases regarding copyrightability of character, work made by an employee in the course of his duties, and copyright infringement issue of linking. Part VI is the conclusion.

• 논문접수 : 2011. 2. 8. • 심사 : 2011. 2. 14. • 게재확정 : 2011. 2. 21.

.....

www.kci.go.kr

I. 서론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함), 저작권법 등과 관련한 2010년도 대법원의 주요 재판례를 해설·검토한다. 지적재산법에 속하는 산업재산권 중에서 소위 創作法이라 일컫는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II), 標識法에 속하는 상표법(III), 넓은 의미의 산업재산권에 해당하는 부정경쟁방지법(IV), 그리고 역시 창작법에 속하는 저작권법(V.)의 순서로 살펴본다.

II.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관련 재판례

1. 발명의 특허요건—신규성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후4087 판결 [등록무효(특)]

[사건개요]

원심인 특허법원 2009. 10. 16. 선고 2009허351 판결은 한자학습을 위하여 학습교재의 한자만화 이미지 도시면의 각 부분을 공간적·물리적으로 배치·형성하는 구성을 취한 이 사건 발명에 대하여 “시각적 배치를 유기적으로 구성하여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발명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발명의 성립을 인정하면서도, 신규성 등 특허요건이 결여되어 그 특허등록이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결취소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되었다. 심리불속행 사건이므로 상고이유 중의 하나인 원심판결의 신규성에 관한 판결요지만을 소개한다.

[판결요지]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에서 시험, 간행물예의 발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발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학술단체에서의 서면발표, 박람회 출품 등으로 인한 발명의 공개에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한 취지는 그와 같은 방식의 공개에 관하여는 일정한 절차적 요건하에 신규성을 인정하여 특허로 보호함으로써 산업기술의 개발을 용이하게 하고 그로 인한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일반 공중의 신뢰를 보호하고 예측가능성을 담보하자는 데 있다. 따라서 박람회 출품의 경우 공지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박람회 출품행위 및 그와 밀접불가분한 행위에 한정될 뿐, 박람회 출품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이루어진 상업적 판매행위까지 공지의 예외를 인정할 수는 없다.

[판결해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한 공개행위, 즉 소위 ‘자기공지’의 경우 그날부터 6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서 그 취지 및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특허출원 전에 공개 행위가 있었다라도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적용하여 신규성을 의제한다. 구 특허법 제30조 제1항은 시험, 간행물예의 발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발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학술단체에서의 서면발표, 박람회 출품 등으로 공개 형태를 제한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2006. 3. 3. 법률 제7871호 개정에 의해 현행법에서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해 이루어진 특허출원 전 6개월 이내의 “모든 공개행위”가 공지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¹⁾ 대상

1) 신규성 의제 범위의 확대 취지에 대해서는, 좌승관, “2006년도 개정 특허법·실용신안법 및 하위 법령의 주요 내용”, 『지식

판결은 ‘신규성 의제’의 범위가 확대되기 이전의 사안이다. 즉, 공개 형태를 제한하던 구 특허법에 따라 이루어진 특허출원에 관한 것으로서 특정한 공개 형태를 그 취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대상 판결의 골자이다.

2. 발명의 특허요건—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후4998 판결 [등록무효(특)]

[판결요지]

특허등록된 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경우에 있어, 그 특허발명의 과제 및 효과가 공지된 발명의 연장선상에 있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수치범위 내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 특허발명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 다만, 그 특허발명에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구성요소가 부가되어 있어서 그 특허발명에서의 수치한정이 보충적인 사항에 불과하거나, 수치한정을 제외한 양 발명의 구성이 동일하더라도 그 수치한정이 공지된 발명과는 상이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그 효과도 이질적인 경우라면, 수치한정의 임계적 의의가 없다고 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판결해설]

재산 21], 특허청, 2006. 11., 106면.

2) 특허법원 지적재산소송실무연구회 편, 『지적재산 소송실무(전면개정판)』, 박영사, 2010, 179면.

3) 정상조·박성수 공편, 『특허법 주해 I』, 박영사, 2010, 377~378면(조영선 집필부분).

4) 이러한 쟁점과 관련된 것으로 공지물질의 의약품도에서 유효성분의 결정형과 결정순도만을 한정한 것에 특징이 있는 수치한정발명 또는 선택발명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의 판단기준을 재확인한 것으로는,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후1203 판결 [등록무효(특)] 참조.

발명의 구성요건 중 예컨대 온도나 배합비율과 같이 일정한 범위를 가지는 구성요소의 수치를 한정한 발명을 수치한정발명이라 한다. 이러한 발명에서는 수치한정을 채용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현저한 작용효과, 즉 소위 ‘臨界의 意義’가 명세서의 실시 예, 도면 등에 명확히 나타나 있어야 진보성이 인정된다.²⁾ 수치한정의 임계적 의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① 당해 발명의 과제 및 효과가 선행기술의 연장선상에 있는 경우에는 그 수치한정 범위 내에서의 효과가 수치한정 범위 외의 효과에 비하여 현저히 향상되어야 하고, ② 당해 발명의 과제가 선행기술과 상이하고 그 효과도 이질적인 경우에는 수치한정을 제외한 양 발명의 구성이 동일하여도 수치한정의 임계적 의의를 요하지 않는다는 방법론이 제시되고 있다.³⁾ 대상 판결은 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으로 이러한 방법론을 확인하고 아울러 수치한정의 임계적 의의가 진보성 판단에 반드시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⁴⁾

3. 직무발명의 보상금 산정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26769 판결 [손해배상]

[판결요지]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제3자에게 양도한 이후에는 더 이상 그 발명으로 인하여 얻을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직무발명의 양수인이 직무발명을 실시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양수인이 처한 우연한 상황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어서 이러한 양수인의 이익액까지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직무발명 보상금의 산정에 참작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사용자가 직

무발명을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양도대금을 포함하여 양도시까지 사용자가 얻은 이익액만을 참작하여 양도인인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할 직무발명 보상금을 산정해야 한다.

[판결해설]

대상 판결의 사실관계는 자유발명의 목시적 양도와 관련된 것이지만, 구체적 판시 내용은 인수·합병 등 사업재편이 이루어진 경우 직무발명 보상금의 지급 의무자 및 그 산정 기준에 관해 판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⁵⁾ 가령, 영업양도의 경우 직무발명 보상금의 지급 의무는, 그 보상금 채무를 인수하였거나 상호를 계속 사용한 경우, 또는 채무인수의 광고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영업양수회사는 그 영업양도 전에 종업원이 사용자(영업양도회사)에게 양도한 직무발명의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대상 판결에서는 상법 제44조의 채무인수의 광고를 한 사실을 인정하여 영업양수회사에게 보상금 지급의무를 인정하였다. 문제는 영업양수회사가 지급할 보상금의 산정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점인데,⁶⁾ 이에 대해 대상 판결은 영업양도회사(사용자)가 영업양수회사에게 직무발명을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양도대금을 포함하여 양도시까지 사용자가 얻은 이익액만을 참작하여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할 직무발명 보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것이다.

4. 권리확인심판청구에서 확인대상발명의 특징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후29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판결요지]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대응하는 구체적인 구성이 일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구성만으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대상발명은 특정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판결해설]

종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의 기술구성이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내린 심결은 위법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입장이었다.⁷⁾ 대상 판결이 주목되는 점은 구체적인 구성에 일부 불명확한 점이 있더라도 나머지 구성만으로 확인대상발명의 권리범위 속부를 판단할 수 있다면 확인대상발명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 점이다. 확인대상발명의 특징은 어디까지나 실제 판단을 위한 전제로서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었는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의 특징을 너무 형식적·도식적으로 처리하는 자세도 피해야 한다.⁸⁾ 대상 판결은 이러한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정도의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5) 이에 관한 상서는, 飯塚卓也 編著, 『徹底解析 職務發明-職務發明をめぐる紛争の分析から制度設計まで』(別冊NBL No.105), 商事法務, 2005., 115면 이하.
 6) 이에 관한 국내문헌으로는 강명수 교수(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논문(“직무발명에 있어서 권리귀속과 정당한 보상에 관한 고찰”, 한양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2., 144면 이하)이 자세하다.
 7)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후656 판결 ; 同 2005. 9. 29. 선고 2004후486 판결 등.
 8) 이회기, “수치한정 특허발명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정도-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후656 권리범위확인(특)”, 『특허판례연구』, 박영사, 2009, 649~650면 참조 ; 같은 취지, 특허법원 지적재산소송실무연구회 편, 앞의 책, 354~355면.

5. 디자인 유사 여부 판단기준 및 그 방법
대법원 2010.8.26. 선고 2009후4148
판결 [등록무효(디)]

[판결요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대비되는 디자인의 대상 물품이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형태의 변화도 참작하여 그 유사 여부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판결해설]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은 개개의 요소에 국한되지 않고 개개의 요소를 결합하여 전체 대 전체로써 대비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⁹⁾ 대상 판결은 이러한 디자인의 전체관찰을 강조하는 한편으로, 대비되는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들이 형태의 변화가 있는 물품인 경우, 그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형태의 변화 전후에 따라 서로 같은 상태에서 각각 대비한 다음 이를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이다.¹⁰⁾



III. 상표법 관련 재판례

1.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가. 국기·국장·군기·훈장·포장·기장 등과 동일·유사한 상표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8후4721
판결 [등록무효(상)]

[판결요지]

해군사관학교 사관생도의 견장 “”은 해군사관학교 사관생도로서의 신분과 그 학년을 표상하므로 그 전체가 대한민국의 기장에 해당하고, 전체적으로 관찰해 볼 때 등록상표 “”와 그 외관이 유사하지 아니하여, 위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현행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와 다르게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나. 공서양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상표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후456
판결 [등록무효(상)]

[판결요지]

구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4호는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된 상표법은 위 규정을 ‘상표 그 자체 또는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와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라고 개정하면서, 그 부칙에서 위 개정 규정에 관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개정 상표법 시행일 전인 1999. 12. 10. 출원하여 등록된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심판 및 소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인 구 상표법 제7

9) 디자인의 전체관찰에 대한 상세는, 노태정·김병진, 『디자인보호법(3정판)』, 세창출판사, 2009, 414면 이하.

10) 특허법원 지적재산소송실무연구회 편, 앞의 책, 448면 참조.


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저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후2510 판결 [등록무효(상)]

[판결요지]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등록사유란, 타인의 선사용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저명 정도, 당해 상표와 타인의 선사용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각 구성, 상품 혹은 영업의 유사 내지 밀접성 정도, 선사용상표 또는 서비스표 권리자의 사업다각화 정도, 이들 수요자 층의 중복 정도 등을 비교·종합한 결과, 당해 상표의 수요자가 그 상표로부터 타인의 저명한 상표 또는 서비스표나 그 상품 또는 영업 등을 쉽게 연상하여 출처에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2] 등록상표 “”는 그 수요자들이 선사용상표인 “TOEFL”이나 그 영업 또는 상품 등을 쉽게 연상하여 출처에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무효로 한다고 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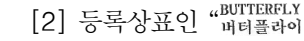


라. 국내외 주지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후807 판결 [등록무효(상)]

[판결요지]

[1] 구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상표 출원인이 특정인의 주지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여야 하는바, 특정인의 상표가 주지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의 사용기간, 방법, 태양 및 이용범위 등과 거래실정 또는 사회

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 등이 기준이 되며,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특정인의 상표의 주지·저명 또는 창작성의 정도, 특정인의 상표와 출원인의 상표의 동일·유사성의 정도, 출원인과 특정인 사이의 상표를 둘러싼 교섭의 유무와 그 내용, 기타 양 당사자의 관계, 출원인이 등록상표를 이용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였는지 여부, 상품의 동일·유사성 내지는 경제적 건련관계 유무, 거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위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등록상표인 “”와 선사용상표들인 “” 및 “ Butterfly”의 유사 정도, 위 선사용상표들의 주지 정도, 등록상표의 지정상품들과 선사용상표들의 사용상품들 사이의 경제적 건련관계, 상표분쟁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위 등록상표의 출원인은 선사용상표들을 모방하여 선사용상표들에 축적된 양질의 이미지나 선사용상표들이 갖는 고객흡인력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선사용상표들의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기 위하여 위 등록상표를 출원하였다고 한 사례.

[판결해설]

대상 판결들은 모두 상표법 제7조 제1항 각호의 부등록사유에 관한 것이다. 2008후4721 판결은 전체로서의 해사 견장이 대한민국 기장에 해당하더라도 그 중 닷 모양만이 유사한 상표는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호(현행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상표라는 취지이다. 2010후456 판결은 제3자가 등록한 ‘백남준미술관’ 상표에 관한 것으로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와 개정법의 그것을 비교할 때 그 규정내용과 적용범위가 개정법에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한정되어 있지만,

개정 규정에 관한 별도의 경과 규정이 없고 이러한 개정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중전 규정으로 형성된 상표법 질서의 존속에 대한 제3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개정법 시행 전에 출원·등록된 이 사건 상표에 대해서는 구 상표법이 적용된다는 취지이다. 2010후807 판결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시기에 관한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다.¹¹⁾ 문제는 抽象的 法理를 구체적 사건에 적용하는 단계에서 발생한다. 대상 판결은 구체적 사실인정과 그에 따라 법리를 적용·판단하는 것이至難한 실무적 과제라는 점을 새삼 일깨워준다.


2. 상표권의 효력 제한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후4585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판결요지]

[1]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가격 또는 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사용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수요자가 그 사용상품을 고려하였을 때 품질, 효능, 형상 등의 성질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직감할 수 있으면 이에 해당한다.

[2] 확인대상상표 “핫골드윙”은 영어단어 ‘hot’, ‘gold’, ‘wing’의 한글 음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수요자에게 확인대상상표의 ‘hot’은 맵

다는 뜻으로, ‘wing’은 ‘닭 날개’의 뜻으로 각 직감될 것이고, ‘gold’는 그 사용상품의 우수한 성질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되는 단어이어서, 확인대상상표를 그 사용상품인 ‘매운맛 소스가 가미된 닭 날개 튀김’에 사용하는 경우 수요자에게 ‘우수한 품질의 매운 닭 날개 튀김’으로 직감될 것이며, 또한 확인대상상표는 같은 크기의 한글을 나란히 배열하고 있어서 그 사용상품의 품질, 원재료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고 있으므로, 확인대상상표는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상품의 품질, 원재료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여, 등록상표 “”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해설]

상표법 제51조는 공익적인 견지 및 상표법에 의한 상표보호의 목적에 비추어 특정인에게 상표권을 독점시키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표 그 밖에 상표권의 범위 밖에 두는 것이 적당한 상표를 열거하여 상표권의 消極的 禁止權(negatives Verbotungsrecht)이 미치는 한계를 법에 의하여 제한하려는 규정이다.¹²⁾ 대상 판결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가격 또는 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상 판결은 확인대상상표가 그 사용상품의 품질, 원재료 등을 나타내는 記述的 標章을 ‘같은 크기의 한글을 나란히 배열’하여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함으로써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¹³⁾

11) 종래 제12호의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에 관해서는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후3379 판결 등이 있고, 그러한 상표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시는 그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으로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후1362 판결 등이 있다.

12) 송영식 외 6인, 『송영식 지적소유권법 하』, 육법사, 2008, 275면.

3. 사용권자의 오인·혼동행위로 인한 상표등록취소와 상표권자의 주의의무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후3329
판결 [등록취소(상)]

[판결요지]

[1]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의 부정사용행위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에게 오인·혼동행위를 하지 말라는 주의나 경고를 한 정도로는 부족하고, 사용실태를 정기적으로 감독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표사용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를 실질적으로 그 지배하에 두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하며,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상표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상표권자가 통상사용권자들에게 브랜드 매뉴얼을 교부하고 그 준수 여부를 검사하여 시정을 요청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상표사용에 관하여 그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에 두고 감독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해설]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의 제도적 취지는 상표권자에게 전용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그 등록상표를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감독할 책임을 부여하고, 그 감독의무를 위반한 상표권자에게 등록취소로 인한 상표권의 소멸이라는 제재 조치를 취함으로써 부정경쟁을 방지하고 수요

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다.¹⁴⁾ 문제는 어떠한 경우에 상표권자가 사용권자의 부정사용행위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되어 그 등록취소를 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 종래 학설은 “사용실태를 정기적으로 보고받거나 상품의 품질을 검사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권자를 그 지배하에 두고 있는 것과 같은 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하였다.¹⁵⁾ 대상 판결은 이러한 주의의무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여 “브랜드 매뉴얼을 교부하고 그 준수 여부를 검사하여 시정을 요청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IV.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재판례

1. ‘팝업광고’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12238
판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판결요지]

[1] 인터넷 웹페이지상의 팝업광고 행위가 팝업창 자체의 출처표시 유무, 웹페이지 내에서의 팝업창의 형태 및 구성, 웹페이지의 운영목적과 내용, 팝업창의 출현 과정과 방식 등에 비추어 웹페이지상에 표시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를 그 팝업광고의 출처표시로 사용한 것으로 인식되고 이로써 팝업광고의 영업 활동이 타인의 광고영업 활동인 것처럼 혼동하게 하는 경우에는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13) 대상 판결과 같은 취지의 것으로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2536 판결[상표법 위반]은 등록상표 “족쌈”은 수요자에게 ‘족발을 김치와 함께 쌈을 싸서 먹는 음식’ 등의 뜻으로 직감될 수 있어서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는 ‘상품의 품질·원재료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상표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14) 문삼섭, 『상표법(제2판)』, 세창출판사, 2004, 989면.

15) 문삼섭, 앞의 책, 991면; 최성우 편저, 『주제별 상표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00, 546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나)목이 규정하고 있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2] 갑 회사는 국내 최대의 인터넷 포털사인 '네이버'를 운영하면서 배너광고를 게재하거나 우선순위 검색결과 도출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광고영업을 해 오고 있었는데,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업링크솔루션'이라는 프로그램을 배포하여 이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로 위 네이버에 접속할 경우 네이버 화면에 갑 회사의 광고 대신 피고인들의 광고가 대체 혹은 삽입된 형태로 나타나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위 광고가 그 둘레에 별도의 테두리가 없는 이른바 레이어 팝업(Layer Pop-up)의 형태로 나타나고, 피고인들의 광고 자체에는 그 출처가 전혀 표시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들의 광고가 이용자의 동의에 의해 위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화면에만 나타날지라도 반드시 그 설치자한테만 노출되는 않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광고가 네이버 화면에 흡착되고 일체화된 형태로 나타난 이상 위 프로그램의 설치 당사자도 피고인들의 광고를 갑 회사가 제공한 광고와 구분하여 인식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광고행위는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나)목이 규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해설]

피고인들은 '업링크솔루션'이라는 광고차단

및 광고삽입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배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프로그램을 설치한 이용자들이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그 프로그램이 웹사이트 내의 배너광고 위치를 검색하여 해당 위치에 피고인들이 수주한 회사의 광고를 덮어쓰기 방식으로 광고하거나, 웹페이지의 빈 공간을 검색한 후 그 위치에 피고인들이 수주한 회사의 광고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광고영업을 하였다.¹⁶⁾ 대상 판결의 의의는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업링크솔루션'이라는 프로그램을 배포하여 한 팝업광고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인 '영업주체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는 점이다. 문제는 위 프로그램이 특정 웹사이트에서만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는 데에 있다. 대상 판결대로라면 인터넷상 영업주체혼동행위의 인정 폭이 지나치게 넓어질 수도 있다.¹⁷⁾

2. 영업비밀의 요건—'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의 의미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44542 판결 [저작권침해금지 등]

[판결요지]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고,

16) 이에 관해서는, 김판식, "인터넷 웹페이지에서 광고의 삽입·차단과 저작권 침해", 『계간 저작권』, 한국저작권위원회, 2009년 겨울호, 32면.

17) 대상 판결과 사안을 같이 하는 민사 사건으로 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가처분이의]이 있다. 위 결정 이유 중에는 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된 판단이 발견되지 않는데, 이는 아마도 그에 관한 제항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흥미로운 것은 위 대상 판결과 달리 2008마1541 결정의 원심(서울고법 2008. 9. 23.자 2008라618 결정)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영업주체혼동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이유를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

[2] 원고 회사가 수입판매업자인 피고들에게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고주파 수술기의 제조방법에 관하여 비밀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설령 원고 회사가 취업규칙에서 그 직원들에게 일반적인 비밀유지의무와 문서 배포금지의무를 부과하였다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고주파 수술기의 제조방법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해설]

영업비밀의 요건 중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요건에 관한 기준은 영업비밀의 침해유형의 양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그 내용을 정의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가령, 외부인이 회사에 침입하여 영업비밀을 절취하는 경우에는 직원 이외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관리되어야 할 것이고 직원이 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원이 영업비밀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관리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상 판결의 의의는 영업비밀로 유지·관리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있다.¹⁸⁾ 문제는 어떠한 경우에 비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때의 ‘상당한 노력’이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에, 보호하고자 하는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와 그 비밀관리에 소요되는 관리비용과의 비교형량에 의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¹⁹⁾

V. 저작권법 관련 재판례

1. 캐릭터의 독자적 저작물성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저작권침해금지]

[판결이유]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할 것인바, 만화, 텔레비전, 영화, 신문, 잡지 등 대중이 접하는 매체를 통하여 등장하는 인물, 동물 등의 형상과 명칭을 뜻하는 캐릭터의 경우 그 인물, 동물 등의 생김새, 동작 등의 시각적 표현에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으면 원저작물인 게임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다.

[판결해설]

대상 판결은 캐릭터 자체의 저작물성 긍정 여부에 관해 판시하고 있다.²⁰⁾ 최근까지 우리나라 대법원은 캐릭터 자체의 저작물성에 관하여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대상 판결의 저작권 침해사건에서 비로소 명시적으로 캐릭터의 독자적 저작물성을 긍정하는 판결을 하였다. 그런데 캐릭터가 “원저작물인 게임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도, 그 게임물이 저작물로서의 성립요건을 갖춘 것인지, 나아가 구체적으로 어

18)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등 참조.

19) 이에 관한 상세는, 정상조, 『부정경쟁방지법 원론』, 세창출판사, 2007, 96~97면.

20) 이에 관한 학설 대립에 관해서는, 오승중, 『저작권법』, 박영사, 2008, 205면 이하 ; 박성호, 『캐릭터 상품화의 법적 보호』, 현암사, 2006, 113면 이하.

면 저작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설시가 없는 점은 의문이다.²¹⁾ 캐릭터가 등장하는 게임물이 영상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다음 캐릭터의 독자적 저작물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논리적 순서일 것이다.

2. 업무상 저작물의 성립요건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61168
판결 [영업비밀침해행위금지 등]

[판결요지]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9. 4.22. 법률 제 962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컴보법'이라 함) 제5조는 “국가·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이 조에서 '법인 등'이라 함)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은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법인 등을 당해 프로그램의 저작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법인 등의 기획'이라 함은 법인 등이 일정한 의도에 기초하여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함)의 작성을 구상하고, 그 구체적인 제작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명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명시적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묵시적인 기획이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위 법규정이 실제로 프로그램을 창작한 자를 프로그램저작자로 하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예외규정인 만큼 법인 등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현출된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의사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해설]

저작자란 저작물을 실제로 창작한 자를 의미하고(저작권법 및 구 컴보법 각 제2조 제2호), 저작물을 실제로 창작한 자연인만이 저작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한다는 것을 '創作者原則'(Schöpferprinzip)이라 한다.²²⁾ 이 원칙의 유일한 예외가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에 관한 규정(저작권법 제9조, 구 컴보법 제5조)이다. 이와 같이 저작물의 저작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실제 창작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결정하는 사실인정의 문제에 속하고, 저작권법 및 구 컴보법 제2조 제2호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변경할 수 없는 강행규정에 해당한다.²³⁾ 즉, 저작권법 제9조나 구 컴보법 제5조는, 실제의 창작자가 아닌 법인 등 사용자를 저작자로 간주하는 法的擬制 규정이므로, 그 입법취지와 '창작자원칙'을 고려할 때 가능한 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런데 저작권법 제9조나 구 컴보법 제5조가 규정하는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法人 등 使用者의 企劃'이다. 법인 등 사용자의 기획이란 법인 등 사용자가 단지 아이디어를 제시해 방침을 세울 뿐만 아니라, 저작물 작성행위 전체를 지휘·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 등 사용자가 저작물의 작성행위 전체를 통제한다는 뜻을 표명하는 것, 요컨대 저작물 작성의 의사형성에 관여하는 것을 말한다.²⁴⁾ 따라서 '창작자원칙'을 고려할 때에, 법인 등의 묵시적 기획이란 것도 '저작물 작성의 의사형성에 관여하는 것'과 동일시할 수

21) 참고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게임물을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고 정의한다. 이에 따르면 게임물은 컴퓨터프로그램이자 영상물이다.

22) '創作者原則'이란, 창작행위는 자연인만이 할 수 있으며 당해 저작물을 실제로 창작한 자연인만이 저작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한다는 저작권법상의 일반원리를 말한다(Vgl. K. Fromm/W. Nordemann, *Urheberrecht*, 8. Aufl., Kohlhammer, 1994, S.102f., 344).

23)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31309 판결 ; 같은 취지 同 2008. 9. 11. 선고 2006도4806 판결.

24) 정상조 편, 『저작권법 주해』, 박영사, 2007, 291면.

있을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대상 판결의 취지이다.

3. 인터넷 링크와 저작권 침해책임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판결 [손해배상(지)]

[판결요지]

[1] 이른바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한다 하더라도, 이는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4호에 규정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저작물의 전송의뢰를 하는 지시 또는 의뢰의 준비행위로 볼 수 있을지언정 같은 조 제9호의 2에 규정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같은 법 제19조에서 말하는 ‘유형물을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링크를 하는 행위는 구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전송 및 전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되었고 그 검색 기능을 통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이 위 게시물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위 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다만 저작권 침해 게시물이 게시된 목적, 내용, 게시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응태도, 관련 인터넷 기술의 발전 수준, 기술적 수단의 도입에 따른 경제적 비용 등에 비추어, 위 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저작권 침해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위 서비스제공자가 위와 같은 게시물로 인하여 저작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은 경우는 물론,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또한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위 서비스제공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여 게시자의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 게시물을 직접 게시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성립한다.

[판결해설]

링크(linking)란 HTML 태그를 이용하여 어떤 웹화면을 다른 웹화면과 연결시키는 것을 말하며 하이퍼링크(hyperlinking) 또는 하이퍼텍스트 링크라고도 한다. 인터넷이란 자유로운 링크를 전제로 성립하는 것으로 인터넷의 기술적 특성은 하이퍼링크에서 발현된다고 말한다. 링크는 단순 링크와 심층 링크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단순링크(simple link)란 다른 웹페이지의 메인화면으로 링크시키는 것으로서 초기화면 링크(surface link)라고도 한다. 심층링크(deep link)란 다른 웹페이지의 내부화면으로 직접 링크시키는 것을 말한다. 단순링크와는 달리 심층링크는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투입하여 웹페이지를 구축한 경우에 그 웹페이지 운영자의 의도

와는 다르게 이용되게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 이유는 다른 웹사이트의 초기화면을 생략하고 내부화면으로 직접 링크되기 때문에 그렇다. 심층링크(deep link)를 ‘내부화면 링크’라고 옮기는 경우도 있으며 직접링크(direct link)라고도 부른다. 이러한 심층링크 중에서 자신의 웹사이트의 프레임에 유지하면서 타인의 웹사이트상의 콘텐츠를 보여주는 것을 프레이밍 링크(framing link)라고 한다. 최근에는 프레이밍 링크를 인라인 링크(in-line linking) 혹은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ing)라고도 한다. 대상 판결은 바로 이 심층링크에 속하는 프레이밍 링크의 저작권 침해 문제를 다룬 것이다.²⁵⁾

대상 판결은 링크를 전제로 한 인터넷의 특징과 링크가 이루어지는 기술적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회사인 피고에 의한 심층링크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²⁶⁾ 아울러 대상 판결은 링크와 관련된 소위 ‘외부이미지 제공 부분’의 저작권 침해 문제와는 별개로, 피고가 자신의 회원들이 게시판 기능을 사용하여 이용하는 썸네일 이미지 검색서비스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소위 ‘내부이미지 제공 부분’의 저작권 침해의 방조책임 문제와 관련하여,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실시한 다음²⁷⁾ 피고의 부작위에 의한 방조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부정하였다.

VI. 맺음말

2010년도 지적재산법에 관한 주요 대법원 재판례를 관련 법률 분야별로 분류하여 해설하였다. 지면이 제약되어 있는 관계로 필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임의로 선정하여 개관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밝힌다. 그러한 한계 때문에 실무적으로 중요한 재판례임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것들로 적지 않을 것이다. 이 글에서 언급한 재판례의 전문이나 그 밖에 지면 관계로 다루지 못한 재판례 등에 관해서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http://glaw.scourt.go.kr) 사이트에서 사건번호나 관련 주제를 입력·검색하여 이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제어 : 신규성, 진보성, 수치한정발명, 직무발명, 직무발명의 보상,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상표권의 효력 제한, 상표등록취소, 영업주체혼동행위, 영업비밀의 보호, 캐릭터의 독자적 저작물성, 업무상 저작물, 링크와 저작권 침해

Key Words : novelty, inventive step, invention defined by numerical limitation, employee's invention, compensation for the employee's invention, grounds for rejection of registration, ineffectiveness of a trademark right, cancellation of a registered trademark, acts causing confusion about the source of a service, protection of a trade secret, copyrightability of character, work made by an employee in the course of his duties, linking and copyright infringement

25) 대상 판결의 평석으로, 이현목, “인라인 링크(Inline Link)와 전시권 침해”, 법률신문, 2010년 7월 8일자 참조.

26) 같은 취지로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77405 판결 등.

27)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